

|               |
|---------------|
|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 소 관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3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1일

발의자 : 양순임, 경수현, 김경이, 정기혁,  
정해숙, 정윤주, 이용진, 권영애,  
이인순, 김육영, 소형준, 정병기,  
강수진, 진선아

### 1. 제안이유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공감능력 향상,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침. 이에,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발굴·보급, 시설 이용 지원, 국제 교류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규정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 나.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4조)
- 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마.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 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아동청소년과
- 라. 입법예고 : 2023. 8. 21. ~ 2023. 8. 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

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
3.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원
4. 청소년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의 달, 성년의 달 행사 및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